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·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,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, 소방홍보대사,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가.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(안 제3조)

나.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, 시·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(안 제5조)